

의안번호	2215687
의 퇴 인	박균택의원
회 답 일	2026.2.26.
추 계 번호	25D731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93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합계
정신적 손해 보상금 지급	493,494	493,494

주: 본 추계는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인원 수를 바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보상금 신청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정신적 손해를 입은 관련자 본인에게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2(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인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이미 배상 판결을 받거나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개인별 배상 판결 여부 및 결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현행법 제8조제1항¹⁾에서 보상금등의 지급은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신청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자 전원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 제8조제2항²⁾에 따르면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그 기간을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또한 2027년 한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 단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표 2]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개정안 [별표])

피해 내용		보상금
가. 사망 등	사망	400,000,000원
	행방불명	350,000,000원
나. 신체장해	1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315,000,000원
	2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315,000,000원
	3급: 노동능력상실률 100%	315,000,000원
	4급: 노동능력상실률 90%	285,000,000원
	5급: 노동능력상실률 80%	255,000,000원
	6급: 노동능력상실률 70%	225,000,000원
	7급: 노동능력상실률 60%	195,000,000원
	8급: 노동능력상실률 50%	165,000,000원
	9급: 노동능력상실률 40%	135,000,000원
	10급: 노동능력상실률 30%	105,000,000원
	11급: 노동능력상실률 20%	75,000,000원
	12급: 노동능력상실률 15%	60,000,000원
	13급: 노동능력상실률 10%	45,000,000원
	14급: 노동능력상실률 5%	30,000,000원
	기타 등급	10,000,000원
다. 질병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300,000,000원
라. 성폭력피해	200,000,000원	
마. 구금	기본 10,000,000원에 구금일당 300,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	
바. 수배	기본 5,000,000원에 수배일당 100,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	
사. 유죄판결	유죄판결	30,000,000원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15,000,000원
아. 해고 등	해고	30,000,000원
	정직 이하	15,000,000원
자. 학사징계	제적, 정학	30,000,000원
	근신	15,000,000원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피해 내용별 보상금 지급 대상 인원을 바탕으로, 개정안 별표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한 보상금 지급 예상액은, 사망 등에 대해 918억원, 신체장해에 대해 2,283억원, 질병 등에 대해 336억원, 성폭력피해에 대해 42억원, 구금에 대해 1,085억원, 수배에 대해 20억원, 유죄판결에 대해 49억원, 해고 등에 대해 60억원, 학사징계에 대해 143억원 등 총 4,935억원으로 추계됨

[표 3] 피해내용별 보상금 지급 예상액

(단위 : 원, 명)

피해 내용		보상금	대상인원	총 소요
계				493,493,900,000
가. 사망 등	사망	400,000,000	155	62,000,000,000
	행방불명	350,000,000	85	29,750,000,000
나. 신체장해	급수별 대상인원 총 합계	급수별 상이	3,895	228,255,000,000
다. 질병 등		300,000,000	112	33,600,000,000
라. 성폭력피해		200,000,000	21	4,200,000,000
마. 구금	기본 10,000,000원에 구금일당 300,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		2,455명 (279,713일)	108,463,900,000
바. 수배	기본 5,000,000원에 수배일당 100,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		170명 (11,900일)	2,040,000,000
사. 유죄판결	유죄판결	30,000,000	156	4,680,000,000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15,000,000	17	255,000,000
아. 해고 등	해고	30,000,000	199	5,970,000,000
	정직 이하	15,000,000	0	—
자. 학사징계	제적, 정학	30,000,000	476	14,280,000,000
	근신	15,000,000	0	—

주: 위 표의 대상인원은 2025.12.31.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를 입은 관련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총 4,935억원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인원 수를 바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보상금 신청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 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